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1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응세율표 일부개정고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아세안회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상호대응세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7월 0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응세율표”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응세율표”로 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응세율 적용물품 및 그 관세율을 별표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 중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상호대응세율적용 배제에 관한 의정서가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상호대응세율을 조정하는 한편, 말레이시아 등 3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상호대응세율 적용을 중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필리핀산 수입물품에 대한 상호대응세율 조정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필리핀의 협정세율 인하여 대응하여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123개 품목에 대한 상호대응세율을 조정함.

나. 말레이시아 등에 대한 상호대응세율 적용 중단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과 상호대응세율 적용을 상호 중단하는 내용으로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상호대응세율표에 반영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응세율표</p> <p>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응세율 적용물품 및 그 관세율을 별지와 같이 한다.</p>	<p>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응세율표</p> <p>----- 제2조제5항의 -----</p> <p>-----</p>

[별 표]

아세안회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하여 상호대응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및 관세율(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관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 관련)

아세안 회원국	품목번호	품 명	관세율 ¹⁾ (%)
인도네시아	0306	감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정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및 감각류의 분·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5
	0306.1	냉동한 것	
	0306.11	닭새우류(팔리누루스종·피누리루스종·자수스종)	
	0306.11.9000	기타	
	0306.12	바닷가재(호마루스종)	
	0306.12.9000	기타	5
	1302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
	1302.3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302.31.1000	실한천	
	1302.31.2000	분한천	

	1302.31.9000	기타	5
	8701	트랙터(제8709호의 트랙터는 제외한다)	
	8701.10.0000	보행운전형 트랙터 - 2륜 트랙터(농업용 트랙터는 제외한다)	5
필리핀	0901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커피의 껍 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	
	0901.2	커피(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0901.21.00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5
	0901.22.0000	카페인을 제거한 것	5
	0901.90	기타	
	0901.90.2000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	5
	1513	야자[코프라(copra)]유, 팜핵유(palmkerneloil), 바바수유 (babassuoil)와 이들의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 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3.1	야자[코프라(copra)]유와 그분획물	
	1513.19	기타	
	1513.19.1000	정제유(精製油)	0
	1513.19.9000	기타	0
	1704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 외한다)	
	1704.90	기타	
	1704.90.1000	감초 추출물(과자로 만들어진 것은 제외한다)	5
	1704.90.20	캔디류	
	1704.90.2010	드롭스(drops)	5
	1704.90.2020	캐리멜	5
	1704.90.2090	기타	5
	1704.90.9000	기타	5
	2101	커피·차·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 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 (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 (essence)·농축물	
	2101.1	커피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2101.12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을 기본 재료로 하	

2101.12.1000	거나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인스턴트 커피의 조제품	5
2101.12.90	기타	
2101.12.9010	밀크·크림 또는 이들의 대용물을 함유한 것	5
2101.12.9090	기타	5
8702	10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 자동차	
8702.10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 (semi-diesel)]만을 갖춘 것	
8702.10.10	15인 이하인 것	
8702.10.1010	신차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 코치, 버스 또는 미니버스 중 총중량이 6톤 이상이고 18 톤 이하인 것	3
	-- 기타	5
	- 기타	5
8702.10.1020	중고차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 코치, 버스 또는 미니버스 중 총중량이 6톤 이상이고 18 톤 이하인 것	3
	-- 기타	5
	- 기타	5
8702.10.20	15인 초과 35인 이하인 것	
8702.10.2010	신차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 코치, 버스 또는 미니버스 중 총중량이 6톤 이상이고 18 톤 이하인 것	3
	-- 기타	5
	- 기타	5
8702.10.2020	중고차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 코치, 버스 또는 미니버스 중 총중량이 6톤 이상이고 18 톤 이하인 것	3
	-- 기타	5
	- 기타	5
8702.10.30	35인 초과인 것	

8702.10.3010	신차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 코치, 버스 또는 미니버스 중 총중량이 6톤 이상이고 18톤 이하인 것	3	
	-- 기타	5	
	- 기타	5	
8702.10.3020	중고차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 코치, 버스 또는 미니버스 중 총중량이 6톤 이상이고 18톤 이하인 것	3	
	-- 기타	5	
	- 기타	5	
8702.20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8702.20.1000	신차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 코치, 버스 또는 미니버스 중 총중량이 6톤 이상이고 18톤 이하인 것	3	
	-- 기타	5	
	- 기타	5	
8702.20.2000	중고차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 코치, 버스 또는 미니버스 중 총중량이 6톤 이상이고 18톤 이하인 것	3	
	-- 기타	5	
	- 기타	5	
8702.30	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8702.30.1000	신차	5	
8702.30.2000	중고차	5	
8702.40	추진용 전동기만 갖춘 것		
8702.40.1000	신차	5	
8702.40.2000	중고차	5	
8702.90	기타		
8702.90.10	15인 이하인 것		

8702.90.1010	신차	5
8702.90.1020	중고차	5
8702.90.20	15인 초과 35인 이하인 것	
8702.90.2010	신차	5
8702.90.2020	중고차	5
8702.90.30	35인 초과인 것	
8702.90.3010	신차	5
8702.90.3020	중고차	5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8703.2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만을 갖춘 것)	
8703.21	실린더용량이 1,000cc 이하인 것	
8703.21.7000	신차 - 영구차 및 최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8703.21.8000	중고차 - 영구차 및 최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cc 초과 1,500cc 이하인 것	
8703.22.7000	신차 - 구급차, 영구차 및 최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8703.22.8000	중고차 - 구급차, 영구차 및 최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것	
8703.23.10	2,000cc 이하인 것	
8703.23.1010	신차 - 구급차, 영구차 및 최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8703.23.1020	중고차 - 구급차, 영구차 및 최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8703.23.90	기타	
8703.23.9010	신차 - 구급차, 영구차 및 최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8703.23.9020	중고차 - 구급차, 영구차 및 최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8703.24.10	4,000시시 이하인 것	
8703.24.1010	신차 - 구급차, 영구차 및 최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8703.24.1020	중고차 - 구급차, 영구차 및 최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8703.24.90	기타	
8703.24.9010	신차 - 구급차, 영구차 및 최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8703.24.9020	중고차 - 구급차, 영구차 및 최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8703.3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만을 갖춘 것]	
8703.31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이하인 것	
8703.31.7000	신차 - 구급차, 영구차 및 최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8703.31.8000	중고차 - 구급차, 영구차 및 최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8703.32.10	2,000시시 이하인 것	
8703.32.1010	신차	5
8703.32.1020	중고차	5
8703.32.90	기타	
8703.32.9010	신차	5
8703.32.9020	중고차	5
8703.33	실린더용량이 2,500시시를 초과하는 것	
8703.33.7000	신차 - 구급차, 영구차 및 최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8703.33.8000	중고차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8703.40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8703.40.1000		신차	
		- 주 동력원이 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인 것	
		-- 실린더용량이 1,000cc 이하인 것	
		----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실린더용량이 1,000cc를 초과하고 1,500cc 이하인 것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실린더용량이 1,500cc를 초과하고 3,000cc 이하인 것	
		---- 2,000cc 이하인 것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기타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실린더용량이 3,000cc를 초과하는 것	
		--- 4,000cc 이하인 것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기타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주 동력원이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인 것	
		-- 홈카	5
		--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 스포츠카,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5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기타 차량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5
		--- 기타(중고차에 한정한다)	5
8703.40.2000		중고차	
		- 주 동력원이 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인 것	

		-- 실린더용량이 1,000cc 이하인 것	
		--- 영구차 및 최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실린더용량이 1,000cc를 초과하고 1,500cc 이하인 것	
		--- 구급차, 영구차 및 최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실린더용량이 1,500cc를 초과하고 3,000cc 이하인 것	
		--- 2,000cc 이하인 것	
		---- 구급차, 영구차 및 최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기타	
		---- 구급차, 영구차 및 최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실린더용량이 3,000cc를 초과하는 것	
		--- 4,000cc 이하인 것	
		---- 구급차, 영구차 및 최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기타	
		---- 구급차, 영구차 및 최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주 동력원이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인 것	
		-- 홈카	5
		--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 스포츠카,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5
		-- 구급차, 영구차 및 최수 호송차를 제외한 기타 차량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5
		--- 기타(중고차에 한정한다)	5
	8703.50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8703.50.1000	신차	
		- 주 동력원이 압축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인 것	
		-- 실린더용량이 1,500cc 이하인 것	
		--- 구급차, 영구차 및 최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실린더용량이 1,500cc를 초과하고 2,500cc 이하인 것	

		---- 2,000cc 이하인 것	5
		---- 기타	5
		-- 실린더용량이 2,500cc를 초과하는 것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주 동력원이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인 것	
		-- 홈카	5
		--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 스포츠카,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5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기타 차량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5
		---- 기타(중고차에 한정한다)	5
8703.50.2000	중고차	- 주 동력원이 압축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인 것	
		-- 실린더용량이 1,500cc 이하인 것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실린더용량이 1,500cc를 초과하고 2,500cc 이하인 것	
		---- 2,000cc 이하인 것	5
		---- 기타	5
		-- 실린더용량이 2,500cc를 초과하는 것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주 동력원이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인 것	
		-- 홈카	5
		--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 스포츠카,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5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기타 차량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5
		---- 기타(중고차에 한정한다)	5
8703.60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8703.60.1000	신차		

		- 주 동력원이 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인 것	
		-- 실린더용량이 1,000cc 이하인 것	
		--- 영구차 및 최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실린더용량이 1,000cc를 초과하고 1,500cc 이하인 것	
		--- 구급차, 영구차 및 최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실린더용량이 1,500cc를 초과하고 3,000cc 이하인 것	
		--- 2,000cc 이하인 것	
		---- 구급차, 영구차 및 최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기타	
		---- 구급차, 영구차 및 최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실린더용량이 3,000cc를 초과하는 것	
		--- 4,000cc 이하인 것	
		---- 구급차, 영구차 및 최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기타	
		---- 구급차, 영구차 및 최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주 동력원이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인 것	
		-- 홈카	5
		--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 스포츠카,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5
		-- 구급차, 영구차 및 최수 호송차를 제외한 기타 차량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5
		--- 기타(중고차에 한정한다)	5
8703.60.2000	중고차	- 주 동력원이 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인 것	
		-- 실린더용량이 1,000cc 이하인 것	
		--- 영구차 및 최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실린더용량이 1,000cc를 초과하고 1,500cc 이하인 것	
		--- 구급차, 영구차 및 최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를 초과하고 3,000시시 이하인 것	
		---- 2,000시시 이하인 것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기타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 4,000시시 이하인 것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기타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주 동력원이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인 것	
		-- 홈카	5
		--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 스포츠카,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5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기타 차량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5
		---- 기타(중고차에 한정한다)	5
8703.70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8703.70.1000	신차	
		- 주 동력원이 압축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인 것	
		--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이하인 것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를 초과하고 2,500시시 이하인 것	
		--- 2,000시시 이하인 것	5
		--- 기타	5
		-- 실린더용량이 2,500시시를 초과하는 것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주 동력원이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인 것	
		-- 홈카	5
		--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 스포츠카,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5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기타 차량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5
		---- 기타(중고차에 한정한다)	5
	8703.70.2000	중고차	
		- 주 동력원이 압축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인 것	
		-- 실린더용량이 1,500cc 이하인 것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실린더용량이 1,500cc를 초과하고 2,500cc 이하인 것	
		---- 2,000cc 이하인 것	5
		---- 기타	5
		-- 실린더용량이 2,500cc를 초과하는 것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	5
		- 주 동력원이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인 것	
		-- 홈카	5
		--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 스포츠카,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5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기타 차량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5
		---- 기타(중고차에 한정한다)	5
	8703.80	그 밖의 차량(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	
	8703.80.1000	신차	
		- 홈카	5
		-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 스포츠카,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5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기타 차량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5

		-- 기타(중고차에 한정한다)	5
8703.80.2000	중고차		
	- 홈카		5
	-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 스포츠카,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5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기타 차량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5
	-- 기타(중고차에 한정한다)		5
8703.90.0000	기타		
	- 홈카		5
	-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 스포츠카,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5
	-- 기타(중고차에 한정한다)		5
	- 구급차,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기타 차량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5
	-- 기타(중고차에 한정한다)		5
8704	화물자동차		
8704.2	그 밖의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의 것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8704.21.10	일반 화물자동차		
8704.21.1010	신차		5
8704.21.1020	중고차		5
8704.21.90	기타		
8704.21.9010	냉동차·냉장차		
	- 냉동차		5
8704.21.9020	탱크차		5
8704.21.9090	기타		5
8704.22	총중량이 5톤 초과 20톤 이하인 것		
8704.22.10	일반 화물자동차		
8704.22.101	총중량 10톤 이하인 것		
8704.22.1011	신차		5
8704.22.1012	중고차		5

8704.22.109	기타	
8704.22.1091	신차	5
8704.22.1092	중고차	5
8704.22.90	기타	
8704.22.9010	냉동차·냉장차	
	- 냉동차	5
8704.22.9020	탱크차	5
8704.22.9090	기타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차량	5
	- 기타	
	-- 총중량이 6톤 이하인 것	
	--- 압축장치가 장착된 쓰레기수거차, 벌크상태의 시멘트 또는 콘크리트 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차량, 픽업트럭 및 이와 유사한 차량	5
	-- 기타	5
8704.23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것	
8704.23.10	일반 화물자동차	
8704.23.1010	신차	5
8704.23.1020	중고차	5
8704.23.90	기타	
8704.23.9010	냉동차·냉장차	
	- 냉동차	5
8704.23.9020	탱크차	5
8704.23.9090	기타	5
8704.3	기타(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으로 한정한다)	
8704.3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8704.31.10	일반 화물자동차	
8704.31.1010	신차	5
8704.31.1020	중고차	5
8704.31.90	기타	
8704.31.9010	냉동차·냉장차	
	- 냉동차	5
8704.31.9020	탱크차	5
8704.31.9090	기타	5
8704.32	총중량이 5톤을 초과하는 것	

8704.32.10	일반 화물자동차	
8704.32.1010	신차	5
8704.32.1020	중고차	5
8704.32.90	기타	
8704.32.9010	냉동차·냉장차	
	- 냉동차	5
8704.32.9020	탱크차	5
8704.32.9090	기타	5
8704.90	기타	
8704.90.10	일반 화물자동차	
8704.90.1010	신차	5
8704.90.1020	중고차	5
8704.90.90	기타	
8704.90.9010	냉동차·냉장차	5
8704.90.9020	탱크차	5
8704.90.9090	기타	5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8708.2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8708.29.0000	기타	
	- 안전벨트 부분품	3
	- 도어 트림 조립품의 구성요소	
	-- 제8701호 차량용의 것	3
	-- 구급차용의 것	3
	-- 제8702호, 제8703호, 제8704호(소호 8704.10호의 것은 제외한다) 차량용의 것	
	--- 도어트림 우/좌, 리어 도어트림 좌/우, 카페트, 하체소음 흡입제, 타이어 흡반이, 트림내장제[예: 파스너, 트렁크 매트, 차 천장자재, 전후 필라(차체 구분축), 필라(중앙축의 상하)트림, 대쉬보드 흡음재, 도어받침 흡음재, 플레이트 어셈블리]	5
	--- 기타	3
	- 기타	5
8708.30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8708.30.2000	브레이크 부스터	
	- 소호 제8704.10호 또는 제8705호 차량용의 것을 제외한 것	5

8708.30.3000	전자 제어식 제동장치		
	- 소호 제8704.10호 또는 제8705호 차량용의 것을 제외한 것	5	
8708.30.9000	기타		
	- 소호 제8704.10호 또는 제8705호 차량용의 것을 제외한 것	5	
8708.40.000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 기어박스의 부분품	5	
8708.5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 상관없다), 비구동 차축, 그 부분품		
8708.50.2000	비구동 차축과 그 부분품		
	- 조립되지 않은 것	3	
	- 기타	5	
8708.80.0000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		
	- 부분품		
	-- 제8701호 또는 제8703호의 차량용의 것	1	
	-- 기타	0	
8708.9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8708.91.0000	방열기와 그 부분품		
	- 부분품	3	
8708.92.0000	소음기(머플러), 배기관, 그 부분품		
	-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 제8701호의 차량용(농업용 트랙터용의 것을 제외한다.)	5	
	-- 제8703호의 차량용(구급차용의 것에 한정한다)	5	
	- 부분품(제8701호, 제8703호 차량용의 것에 한정한다)	5	
8708.94.0000	운전대 · 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 · 운전박스과 그 부분품		
	- 제8701호의 차량용의 것		
	-- 운전대 · 스티어링칼럼과 운전박스를 제외한 것	5	
8708.95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과 그 부분품		
8708.95.1000	에어백	1	
8708.95.9000	기타	1	
8708.99	기타		

8708.99.10	새시	
8708.99.1010	제8701호의 것	5
8708.99.1020	제8702호의 것	5
8708.99.1030	제8703호의 것	5
8708.99.1040	제8704호의 것	5
8708.99.1050	제8705호의 것	5
8708.99.9000	기타	
	- 미조립 연료탱크, 엔진브라켓 및 알루미늄 방열기 코어(단열형에 한정한다)	
	-- 제8701호의 것	
	---- 미조립 연료탱크, 엔진브라켓	1
	---- 기타	3
	-- 제8701호의 것이 아닌 것	
	---- 미조립 연료탱크, 엔진브라켓	1
	---- 기타	
	----- 제8702호부터 제8704호에 주로 사용되는 연료탱크 로우어, 퓨얼 캡, 필터 파이프, 필터 호스 어셈블리, 연료탱크 밴드, 연료탱크 및 탱크 어셈블리 리저브	5
	----- 기타	3
	- 기타(방열기 보호판을 제외한 것)	5
8711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사이드카(side-car)	
8711.10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8711.10.1000	모터사이클	5
8711.10.2000	모페드	5
8711.10.9000	기타	5
8711.20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초과 250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8711.20.1000	모터사이클	5
8711.20.9000	기타	5
8711.30	실린더용량이 250시시 초과 500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8711.30.1000	모터사이클	5
8711.30.9000	기타	5
8711.40	실린더용량이 500시시 초과 800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8711.40.1000	모터사이클	5
8711.40.9000	기타	5
8714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부터 제8713호까지의 차량의 것으로 한정한다)	
8714.10	모터사이클의 것[모페드(moped)의 것을 포함한다]	
8714.10.1000	안장	5
8714.10.9000	기타	5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율